

2026학년도 제6차

규정심의위원회

- 일 시: 2026. 5. 7.(목), 오후 3시
- 장 소: 기획팀 회의실(문화관 204호)



회의 개요 및 안건

- ◎ 일 시: 2026. 5. 7.(목), 오후 3시
- ◎ 장 소: 기획팀 회의실(문화관 204호)
- ◎ 안 건

연번		안건	입안부서	배석	예상시간
1	심의	「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」 개정	교원인사팀	교원인사팀장	'30
2	심의	「교원인사규정」 개정			
3	심의	「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개정	학사관리팀	학사관리팀장	'30
4	심의	「수업운영에 관한 규정」 개정			

◎ 추후 일정

심의기구(순)	일정
교무위원회	- 2026. 5. 12.(화)
대학평의위원회	- 학칙 해당
법인이사회	- 2026. 5월 중(학칙, 직제, 인사, 보수에 관련한 규정 해당)
차기 규정심의회의	- 2026. 5. 21.(목), 오후 3시

※ 학칙 및 직제규정: 입안예고공청회 3일 이상 의견조회 시행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		

「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1조(교원유형전환) ① 산학협력중심 및 특임중심 교원은 재임용 시, 재임용 결정 후 별도의 평가를 거쳐 강의중심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. ② 유형 전환 평가자는 교무처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및 교육과정위원회 위원 5명으로 구성하며, 적함으로 판정한 평가자의 수가 과반일 경우 최종 적합으로 한다. ③ 유형 전환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 ④ 유형 전환 후 기본급은 <u>별표 6과 같이</u> 강의중심 교원 기준으로 한다. ⑤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총장이 인정한 경우 재임용 시기와 관계없이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쳐 유형 전환을 할 수 있다.	제21조(교원유형전환)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유형 전환 후 기본급은 강의중심 교원 기준으로 한다. ⑤ 좌동
제22조(신청자격) 정년트랙전환임용(이하 ‘전환임용’이라 한다) 대상자의 신청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본교 강의중심유형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제10조 2항의 기간을 제외하고 4년 이상 재직한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한다. 제23조(전환임용기준) ① 전환임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. (개정 2024.12.26.) 1. 제22조를 만족하는 전환임용 신청 교원은 별표 7과 같이 정량평가(가점 포함 80점 배점) 및 정성(면접)평가(30점 배점)를 시행하여 합산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(신설 2024.12.26.) 2.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탁월하여 총장이 인정한 경우 (신설 2024.12.26.) 제24조(전환절차) ① 교무처장은 전환임용 인원(학과 소속 및 교양·대학원 소속 별도), 주요 일정 등 전환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전환임용 신청 교원은 신청서(별표 7-1), 자기평가서(별표 7-3), 그리고 제23조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③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신청자격 심사 및 정량평가와 총장 및 교무처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4명의 정성평가(<u>별표 신설</u>)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제정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.	제22조(신청자격) 좌동 제23조(전환임용기준) 좌동 제24조(전환절차) ① 좌동 ② 좌동 ③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신청자격 심사 및 정량평가와 총장 및 교무처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4명의 정성평가(<u>별표 7-2</u>)를 거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

현 행	개 정 (안)
제25조(임용시기 등) ①제23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환임용 시기는 매년 3월 1일로 한다. ②제23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전환임용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③전환임용시 현 직급을 유지하고, 재직기간은 현 직급 기간(년수)의 70%로 하며, 소수점 이하를 제외한다.	후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. <u>④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환절차는 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 교원에 대하여 추천서 및 공적 조서를 바탕으로 교무처장을 포함한 교무위원 5인의 대학발전기여 정성평가(별표 7-4)를 실시하며,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임용권자가 임용한다.</u> 제25조(임용시기 등) 좌동
<u><신설></u>	<u>부 칙(우석학원- (2026.00.00.))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

【별표 6】 (신설 2022.6.30.) <삭제 2026.00.00.>

비정년트랙 전임교원 강의중심 교원 기본급 기준

직급	급여(만원)	비고
부교수	3,500	재임용시 월10만원 인상 단, 조교수는 상위직급 급여를 초과할 수 없음
조교수	3,100	

【별표7-4】 (신설 2026.0.00.)

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정년트랙전환임용 대학발전기여 정성(면접) 평가서

평가구분	평가항목 및 내용	방법
정성 평가	• 대학 발전 기여도 - 교육·연구 활동을 통한 대학 위상 제고, 대학 전략 수립 및 평가 대응 기여, 대학 주요 보직 수행 및 대학 운영·발전 기여, 재정 안정성 확보 및 자원 확충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	적격 / 부적격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교원인사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 ☒ 개 정 ☐ 폐 지		
소관부서	교원인사팀	관련부서	해당사항 없음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해당사항 없음		
법인이사회	• 해당사항 없음		
대학평의원회	• 해당사항 없음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기존 규정 개정 과정(2024. 12. 26.)에서 발생한 제22조(승진요건) 및 부칙 제2조(경과 조치)의 조항 번호 오기를 바로잡아 규정의 명확성을 기함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• 해당사항 없음		
주요내용 (제·개정내용)	• 제22조(승진요건): 항 번호 오타 수정(8항 -> 9항 , 9항 -> 10항) • 부칙 제2조(경과조치): 항 번호 오타 수정(제7항 제2호 -> 제8항 제2호)		
기대효과	• 규정 명확화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치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해당사항 없음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		
	다. 의견제출 유무	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	
첨부자료	「교원인사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		

「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사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제22조(승진요건) ①~⑧ 생략 ⑧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 임용 심의 대상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(신설 2024.12.26.) 1.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 충족하고, 연구업적 또는 연구비 수혜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경우 2.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 충족하고,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 3. 승진소요기간 및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학교의 정책 또는 발전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⑨제8항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. (신설 2024.12.26.)	제22조(승진요건) ①~⑧ (현행과 같음) ⑨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특별승진 임용 심의 대상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 (신설 2024.12.26.) 1.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 충족하고, 연구업적 또는 연구비 수혜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룬 경우 2.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 충족하고, 학교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경우 3. 승진소요기간 및 승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학교의 정책 또는 발전에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⑩제8항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을 실시할 수 있다. (신설 2024.12.26.)
부 칙(학교법인 우석학원-60(2021.3.4.)호)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제22조(승진요건) 제7항제2호, 제27조(재임용요건) 제11항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.	부 칙(학교법인 우석학원-60(2021.3.4.)호) ① (현행과 같음) ②(경과조치) 제22조(승진요건) 제8항제2호, 제27조(재임용요건) 제11항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신규임용된 교원부터 적용한다.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 ☒ 개 정 ☐ 폐 지		
소관부서	학사관리팀	관련부서	
부서간 협의 결과	• 해당사항 없음		
법인이사회	• 해당사항 없음		
대학평의회	• 해당사항 없음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• 대학 간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목 편성 방식의 차이가 있어 현행 규정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을 해소하기 위한 복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• 해당사항 없음		
주요내용 (제·개정내용)	• 제4항의 경우에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 중 2개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교 교과목의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수정		
기대효과	• 대학 간 교육과정 차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편입생의 학업 연속성 확보 • 교과목 인정 기준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학사 운영의 공정성 및 합리성 제고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회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해당사항 없음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		
	다. 의견제출 유무	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	
첨부자료	「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		

「우석대학교 학사운영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3조(학점인정) ① 편입생이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교양과목, 전공과목,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인정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일반편입 :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(부) 58학점,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(부) 63학점,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 68학점. 다만, 4학년 일반 편입의 경우는 제5호를 준용 2. 학사편입 :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(부) 60학점,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(부) 65학점,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 70학점 3. <삭제 2011.2.25.> 4. <삭제 2011.2.25.> 5.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 4학년 편입 : 졸업학점이 130학점 이상인 학과 95학점 이내,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 102학점 이내 ②외국인학생의 경우, 인정학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졸업학점이 120학점인 학과(부) : 2학년 편입생 29학점, 3학년 편입생 58학점, 4학년 편입생 88학점 2. 졸업학점이 130학점인 학과(부) : 2학년 편입생 32학점, 3학년 편입생 63학점, 4학년 편입생 95학점 3.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학과 : 2학년 편입생 34학점, 3학년 편입생 68학점, 4학년 편입생 102학점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정학점에서 편입생은 교양과정 최저이수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.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정학점 중 전적 대학 전공과정(복수전공, 부전공 포함)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편입학 학과의 전공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3학년 편입생은 최소전공이수학점의 30%이내에서, 4학년 편입생은 최소전공이수학점의 45%이내에서 7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(부)의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, 사범대학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7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직교과목 중 14학점 이내에서 교직부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교원자격증 취	제3조(학점인정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정학점 중 전적 대학 전공과정(복수전공, 부전공 포함)에서 취득한 교과목 중 편입학 학과의 전공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3학년 편입생은 최소전공이수학점의 30%이내에서, 4학년 편입생은 최소전공이수학점의 45%이내에서 7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학과(부)의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, 사범대학의 경우 전적 대학에서 7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직교과목 중 14학점 이내에서 교직부장이 인정할 수 있으며 교원자격증 취

득에 필요한 전공학점인정은 15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3년제 전문대학에서 모집단위와 동일 또는 유사학과를 졸업한 4학년 편입생,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서 4학년 편입생은 최소전공이수학점의 75%이내에서 7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<u>학과의</u>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.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정학점 중 제3항과 제4항에서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본교에서 인정받는 교과목의 학점 수와 다를 경우 적은 학점 수로 인정한다. <u><항 신설></u>	득에 필요한 전공학점인정은 15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3년제 전문대학에서 모집단위와 동일 또는 유사학과를 졸업한 4학년 편입생, 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서 4학년 편입생은 최소전공이수학점의 75%이내에서 7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에 한하여 <u>학과(부)의</u>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. ⑤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 <u>⑦제4항의 경우에 전적대학 이수 교과목 중 2개 이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교 교과목의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</u>
<u><신설></u>	<u>부 칙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

규 정 입 안 서

규정명	「수업운영에 관한 규정」		
입안형태	☐ 제 정 ☒ 개 정 ☐ 폐 지		
소관부서	학사관리팀	관련부서	
부서간 협의 결과	● 해당사항 없음		
법인이사회	● 해당사항 없음		
대학평의회	● 해당사항 없음		
입안사유 (추진배경)	● 국외 대학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학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간 화상 또는 원격으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		
관련근거 (관계법령)	● 해당사항 없음		
주요내용 (제·개정내용)	● 원격수업 시에는 「원격수업운영규정」을 따른다. 다만, 국외 대학과의 교류를 위한 보장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로 수정		
기대효과	● 국외 교류 학생의 수업 문제를 해소하여 대학 간 교류 지속 ● 국내 학생의 수업 결손을 방지하여 원격으로 수업 지속		
구성원 참여·소통을 위한 의견수렴 (공청회, 설명회, 의견조치 등)	가. 의견수렴 유무	해당사항 없음	
	나. 공청회 및 공고기간(포털 및 홈페이지)		
	다. 의견제출 유무		
	라. 의견수렴 반영사항		
첨부자료	「수업운영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 1부		

「수업운영에 관한 규정」 개정(안)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(안)
제11조(휴강·보강) ①본교 교원이 휴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공휴일, 개교기념일, 그 밖의 총장이 정한 경우(이하 “학교 휴강”이라 한다) (개정 2025.8.29.) 2. 출장 및 질병 등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래의 수업시간에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(이하 “개별 휴강”이라 한다) ②학교 휴강에 대하여 총장은 보강일을 정하여 모든 교원 및 학생들에게 이를 공지하고 해당 보강일에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③학교 휴강에 대하여 보강일에 보강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는 개별보강에 준한다. ④개별 휴강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최소 1주전에 휴강사유, 보강일시 및 보강장소가 명시된 보강계획서를 전자출결시스템에 입력하고,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0.12.17.) ⑤개별 휴강의 경우 보강일시 및 보강장소는 수강생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, 보강에 대한 내용은 학과 홈페이지 또는 학과 사무실 게시판, 문자발송 등을 통해 공지하고 수강생 전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⑥보강은 대면수업으로 실시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(LMS)를 통하여 교과목당 1주분에 한하여 실시간 화상 또는 원격으로 수업할 수 있다. <u>다만, 원격수업 시에는 「원격수업운영규정」을 따른다. <단서 신설></u> ⑦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긴급하게 개별 휴강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소속학과(부)장을 거쳐 학사관리팀에 보고하고,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강계획을 세워 전자출결시스템에 입력한 후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⑧부득이한 사유로 보강일을 변경하고자하는 교원은 변경된 (재)보강계획서를 전자출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 ⑨보강결과보고서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보강 후 7일 이내에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보강으로 간주한다. ⑩학사관리팀은 수업관리를 위해 수업기간, 수업시	제11조(휴강·보강) ①~⑤ ⑥보강은 대면수업으로 실시하되, 불가피한 경우에는 스마트학습관리시스템(LMS)를 통하여 교과목당 1주분에 한하여 실시간 화상 또는 원격으로 수업할 수 있으며 <u>원격수업 시에는 「원격수업운영규정」을 따른다. 다만, 국외 대학과의 교류를 위한 보강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⑦~⑫ (현행과 같음)

간, 보강여부를 점검하며, 점검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. ⑪수업운영에 대한 기타 사항은 학사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	
<u><신설></u>	<u>부 칙</u> 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</u>